

## 제 7 장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원조달방안

7.1 소요재원의 규모 및  
투자계획

7.2 자원조달 방안



# 제 7 장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 7.1 소요재원의 규모 및 투자계획

### 7.1.1 연차별 사업계획

- 앞서 검토된 각 부문별 개선방안에 대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달성토록 한다.
- 상위계획인 국토교통부의 계획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구미시의 실행 가능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표 7-1〉 연차별 사업계획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b>1.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b>					
버스차량 이동편의시설 개선	목표연도까지 22대 개선				
	-	5대	5대	6대	6대
저상버스 도입 (준저상버스)	목표연도 이후까지 26대 도입				
	-	5대	5대	2015년 이후 16대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도입	목표연도까지 12대, 1개소 도입				
	-	3대	3대	3대, 1개소	3대
<b>2.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b>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개선	여객자동차터미널 3개소에 대한 단계별 개선 및 확충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개선	목표연도까지 141개소 버스정류장 정비				
<b>3. 보행환경별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b>					
보행우선구역	금오산로, 산업로, 구미중앙로, 역전로 구간				
	-	정비 및 개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노인보호구역	-	3개소	3개소	2개소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	-	9개소	10개소	10개소
기타 보행환경 개선	교통약자 거점지역 및 간선이동축 위주개선				

## 7.1.2 소요비용 원단위 산정

- 소요비용 원단위 산정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07~‘11), 국토교통부」 상의 원단위를 참조하여 산정하였다.
- 특별교통수단은 밴형 차량으로 하였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과 기타 보행환경은 개선 항목 중 구미시에 적합한 항목을 선별하여 원단위를 산정하였다.

〈표 7-2〉 교통이동편의시설 원단위

구분		소요비용원단위
교통수단	버스차량	770만원/대
	저상버스	1.9억원/대
	특별교통수단 (밴형차량)	3.7천만원/대
여객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124만원/개소
	버스정류장	1천만원/개소
보행환경	보행우선구역	25억원/km <sup>2</sup>
	노인보호구역	5천만원/개소
	어린이보호구역	1억원/개소
	기타 보행환경	170만원/개소

## 7.1.3 각 부문별 소요재원 산정

### 가. 버스차량 이동편의시설 개선 연차별 추진계획

- 구미시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버스차량 중 미설치 및 기준 미적합 차량의 60%인 약 22대 정도를 연차별로 개선토록 한다.
- 버스차량은 안내방송 및 전자문자안내시설, 교통약자용 좌석지정, 휠체어승강설비, 장애인 접근가능표시, 수직손잡이 설치 및 승강구의 구분이 명확한 바닥재질로 개선한다.

〈표 7-3〉 버스차량 이동편의시설 개선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연차별 추진계획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수(대)	-	5	5	6	6
사업비(백만원)	-	38.5	38.5	46.2	46.2

주: 버스차량 이동편의시설 개선 770만원/대 소요

## 나. 저상버스 연차별 추진계획

- 저상버스의 운행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대수)에 의거 시와 군은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1/3대수로 정해져 있으므로 구미시에서는 2016년 목표연도까지 법정도입대수의 60%인 약 26대 정도를 도입토록 한다.
- 저상버스 도입은 구미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기준연도 2013년부터 2015년 이후까지 도입토록 한다.

〈표 7-4〉 저상버스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연차별 추진계획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수(대)	-	5	5	2015년 이후 16대	
사업비(백만원)	-	1,330	1,330	3,040	

주: 저상버스 1.9억원/대 소요

## 다.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연차별 추진계획

-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통약자에게 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한다.
- 이동대상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동지원센터에 의한 심의를 통하여 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 구미시 여건을 감안하면 밴 차량의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적용하며, 목표연도까지 약 12대를 도입한다.

<표 7-5> 특별교통수단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연차별 추진계획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수(대)	-	3	3	3	3
사업비(백만원)	-	111	111	111	111

주: 특별교통수단 3.7천만원/대 소요

- 이동지원센터의 도입은 물리적으로 여러 곳에 설치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센터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도록 검토한다.
- 구미시 여건을 감안하여 목표연도까지 이동지원센터 1개소를 구축한다.

<표 7-6> 이동지원센터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연차별 추진계획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소	-	-	-	1	-
사업비(백만원)	-	-	-	150	-

주: 이동지원센터 1.5억원/개소 소요

##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연차별 추진계획

- 교통약자의 환승 및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이동편의시설을 개선 및 확충한다.
  - 수평이동시설 : 보행접근로 출입구 및 경사로의 개선 및 확충과 주출입구 내부통로 개선 및 확충
  - 위생·안내시설 : 장애인 화장실, 안내시설 설치 및 개선

- 경보피난시설 : 유도점자 및 신호장치, 경보(청각, 시각)장치
  - 탑승관련시설 : 매표소 및 개찰구 개선, 승강설비 및 승강장 개선
  - 기타시설 : 자판기, 자동발매기 등 개선 및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치, 제원, 마감, 바닥의 표시 및 안내표시 개선
- 구미시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개선 시 수직이동시설은 개선항목에서 제외토록 한다.

<표 7-7> 여객자동차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연차별 추진계획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항목	-	수평이동시설 위생·안내시설	관리 및 유지		
	-	경보피난시설, 탑승관련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기타시설		관리 및 유지	
사업비(만원)	-	37.2	39.7	39.7	39.7

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선 124만원/개소 소요

### 마.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연차별 추진계획

- 교통약자 거점지역과 간선이동축의 버스정류장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 연차별로 35~36개소의 버스정류장을 개선하여 목표연도까지 약 141개소를 정비한다.

<표 7-8>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연차별 추진계획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소수(개소)	-	35	35	35	36
사업비(백만원)	-	350	350	350	360

주: 버스정류장 개선 1천만원/개소 소요

## 바. 보행우선구역 연차별 추진계획

- 구미시의 보행우선구역예정으로 구미시 원평동 구미역 일원으로 설정하였다.
- 대중교통 이용자와 보행통행량이 많으며 구미중앙로(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구미중앙로 일대를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하여 연차별로 개선토록 한다.

<표 7-9> 보행우선구역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연차별 추진계획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구간(km <sup>2</sup> )	0.3				
사업비(백만원)	-	-	400	300	300

## 사. 노인보호구역 연차별 추진계획

- 구미시의 노인복지시설은 38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미시의 재정 및 주변 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
- 우선적으로 현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에 대하여 구미시의 2016년 목표 연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 그리고, 현재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을 위주로 추가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여 2016년 목표연도까지 10개소를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표 7-10> 노인보호구역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연차별 추진계획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소수(개소)	-	3	3	2	2
사업비(백만원)	-	150	150	100	100

주: 노인보호구역 5천만원/개소 소요

## 아. 어린이보호구역 연차별 추진계획

-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미시행된 29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목표연도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표 7-11〉 어린이보호구역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연차별 추진계획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소수(개소)	-	-	9	10	10
사업비(백만원)	-	시행중	900	1,000	1,000

주: 어린이보호구역 1억원/개소 소요

## 자. 기타 보행환경(음향신호기, 잔여시간표시기) 개선 연차별 추진계획

- 교통약자 거점지역 및 간선 이동축을 중점적으로 음향신호기, 잔여시간표시기 등을 개선 및 확충한다.
- 연차별로 5개소 정도를 개선하여 목표연도까지 총 20개소를 개선 및 확충토록 한다.

〈표 7-12〉 음향신호기, 잔여시간표시기 개선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연차별 추진계획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개소수(개소)	-	5	5	5	5
사업비(만원)	-	8.5	8.5	8.5	8.5

주: 기타 보행환경 170만원/개소 소요

## 7.2 재원조달 방안

### 7.2.1 기본방향

- 투자비용 산출에 대한 실현가능한 재원조달방안 제시
- 구미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중앙정부 재정 지원사업 건의
- 민간사업자의 부담은 해당사업자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행

### 7.2.2 일반투자재원 조달방향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 및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의 보조금을 확대해야 하며, 교통약자의 수단 및 시설의 이동편의 개선은 국가의 기초 사회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구미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은 정부 주도하에 재정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규모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사업비의 분담비율을 지자체 재정능력에 따라 조정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
- 지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을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을 활용한다.
  - 특별회계의 세출항목에는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등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 교통약자를 위한 투자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다.
-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이동편의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도 기반시설의 일종이 되도록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7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며,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방식을 정한다.
- 이외에도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정비, 보행환경 개선, 대규모의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7.2.3 민간투자사업(BTL)의 활용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대상시설에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의 사업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도 포함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키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해서 민간투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을 추진한다.

### 7.2.4 소요자원 조달방안

- 장래 구미시의 목표연도까지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관련 투자 사업비는 약 12,204백만원으로 나타나며,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가 크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미시의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투자비용 유형으로는 국도비 3,482백만원, 시비 5,384백만원, 민간자본 3,33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 교통수단에서 5,703백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보행환경 4,934백만원, 여객시설 1,566백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천연가스버스와의 차액을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보조한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투자비용 재원조달은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표 7-13> 구미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재원조달 방안

구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재원 조달방안(백만원)			
			국·도비	시비	민간	
합계	-	12,204	3,482	5,384	3,338	
교통 수단	소계	38대	5,703	1,532	1,617	2,555
	버스차량 개선		169	-	85	85
	저상버스 도입	26대	4,940	1,235	1,235	2,470
	특별교통수단 도입	12대	444	222	222	-
	이동지원센터 도입	1개소	150	75	75	-
여객 시설	소계	-	1,566	-	783	783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미종합터미널 선 산 터 미 널 구 미 역 사	156	-	78	78
	버스정류장	141개소	1,410	-	705	705
보행 환경	소계	-	4,934	1,950	2,984	-
	보행우선구역	1구역	1,000	-	1,000	-
	노인보호구역	10구역	1,000	500	500	-
	어린이보호구역	29구역	2,900	1,450	1,450	-
	기타보행환경 개선	20개소	34	-	34	-



**Gumi**

• 구미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 부 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조사지

교통약자 이동실태 및 이용만족도  
조사지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부 록

##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조사지

### 1.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구 분		기 준	기 준 적합	기 준 미적합	미설치
안 내 시 설	자 동 안 내 시 설	명확한 음량 및 음색			
		국어와 영어 방송			
	전 자 문 자 안 내 판	승객용 LED단말기 설치			
		한글과 영문지원			
	행 선 지 표 시	차량외부 정면, 후면, 측면			
강한 햇빛, 야간에 식별 가능한 소재					
승 강 구	유 효 폭	승강구 유효폭 0.8m			
	손 잡 이	승강구에 승강용 수직손잡이			
	바 닥 면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			
	계 단 식 별	계단식별에 용이한 색상			
휠 체 어 승 강 설 비	저 상 버 스	차실바닥면적의 35%이상 위치			
		자동경사판 등의 승강설비 구비			
	기 타 버 스	승강구계단 높이는 가급적 낮게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설비 설치유무			
교 통 약 자 용 좌 석	위 치	승강구부근			
	규 모	전체좌석의 1/3 이상 설치 지정			
	안 내 판	교통약자임을 알리는 표시			
	부 저 위 치	앉은 상태에서 누를 수 있는 높이			
휠 체 어 승 강 설 비 가 장 착 된 차 량 의 휠 체 어 사 용 자 공 간	공 간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			
	고 정 설 비	휠체어 지지대 등 유무			
수 직 손 잡 이	저상형, 일반형 농 어 촌 버 스	좌석을 기준 2열 또는 3열마다 수직손잡이 확인			
	지 림	30mm 내외			
장 애 인 접 근 가 능 표 시		휠체어사용자 승차가능 표시부착			

## 2. 여객시설별 이동편의시설

구 분		세부항목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장애인 이용차 역	위 치 및 유 효 폭	위치					
		통로 유효폭					
		크 기					
		재질과 마감					
		바닥면 표시	장애인전용표시				
		안내 표시	전용주차장 유도표시				
보행 접근 로	출입구	연결로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설치					
	경사로	유효폭 및 활동공간	유효폭				
			휴식참				
			참의 활동공간				
		손잡이	기울기	기울기			
			설치	손잡이 연장			
				손잡이 높이			
				손잡이 지름			
	점자표시						
	보행 접근 로	경사로	재질마감				
			추락방지턱				
			완화매트				
출입구 (문)	유효폭 및 활동공간	통과 유효폭					
		출입구의 전면 활동공간					
		출입문 옆 활동공간					
		출입구 바닥면 단차					
	문 형태	형태					
		여닫이문	미닫이문				
			자동문				
		손잡이	손잡이 높이				
	손잡이 형태						
	점자표기						

구 분		세부항목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출입구 (문)	재 질 마 감	점형블록				
		호출벨				
	외 부 안 내 관	촉각도식안내판				
통로 (복도)	유 효 폭	유효폭				
		통로 끝부분 및 50m 이내마다				
	바 닥	바닥단차				
		바닥마감				
		점형블록				
	손 잡 이	설치	통로측변 연속			
			5cm 내외			
		높이				
		손잡이 지름				
		점자표시				
	보 행 장 애 물	돌출폭				
	통 로 높 이	높이 및 안전				
		통로 모서리				
	외 부 안 내 관	킥 플레이트				
위생 시설	장 애 인 화 장 실	접근용이 및 설치유무				
	대 변 기	면적 및 유효폭				
	소 변 기	손잡이 설치구조				
	세 면 대	설치높이				
기타 시설	접 수 대	높이 및 하부공간				
	매 표 소	높이				
	개 찰 구	유효폭 및 자동개폐				
수직 이동 시설	계 단	유효폭 및 면적				
	경 사 로	유효폭 및 경사로				
	승 강 기	설치장소 및 폭/깊이				
	에 스 켈 레 이 터	유효폭 및 안전설비 설치유무				

### 3. 보행환경별 이동편의시설

구분	기준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보도	유효폭	유효폭 2.0m 이상			
	포장	바닥재질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평탄하게 마감			
		보도블록은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			
		덮개설치			
	기울기	기울기 1/18이하			
	차도의 분리 및 보행안전지대	연석의 높이는 25cm 이하, 연석과 보도의 색상 차이			
		가로등, 전주, 간판 등을 설치할 경우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			
		가로수는 바닥면에서 2.5m 가지치기			
	차량 진출입부	보도 등의 높이를 유지, 차도의 경계부분 턱낮추기			
		보도와 차도의 교행구간 구간의 바닥의 색상과 질감의 차이			
	턱낮추기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경사로 설치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차가 2cm 이하 설치			
점형블록	횡단보도 진입부에 설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에는 점형블록 설치				
기타 보행 환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표시 유무			
	음향신호기	음성안내 유무,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우선구역의 횡단보도에는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 ■ 교통약자 이동실태 및 만족도 조사지

### 1. 교통약자(고령자)

조사내용은 교통약자의 특성을 구분하기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본 조사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어 귀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번호에 하나에만 ✓ 해주십시오)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세
거주지	(구미시	읍,	면,	동)

※귀하의 평상시 외출에 대해 하나에만 답해주십시오.

1. 외출 시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병원/의원                      ② 통근(출·퇴근)                      ③ 개인용무                      ④ 여가/오락/친교  
 ⑤ 종교 활동                      ⑥ 교육시설                      ⑦ 복지관                      ⑧ 기 타 (        )

2. 평균 외출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주 4 ~ 5회                      ③ 주 2 ~ 3회  
 ④ 한달에 3 ~ 4회                      ⑤ 거의 하지 않는다

3. 외출 시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버스                      ② 승용차                      ③ 택시  
 ④ 특별교통수단 (복지관 셔틀버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차량, 휠체어리프트 차량)  
 ⑤ 기 타 (        )

4. 현재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높은 탑승계단                      ② 안내시설 미비 (자동안내방송, 전자문자안내판, 행선지표시)  
 ③ 차내 통로협소                      ④ 노약자 좌석 및 공간부족                      ⑤ 기 타 (        )

6.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철도역 이용 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7. 시외버스터미널, 철도역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출입구 및 보행 접근로상의 문제점 (높은 계단, 경사로 기울기 등)  
 ② 매표소·개찰구 및 승강시설 이용 불편  
 ③ 안내시설 및 정보제공 미비 (전자문자판, 안내방송, 수화안내시스템 등)  
 ④ 위생시설 사용의 어려움 (장애인 화장실 등)  
 ⑤ 기타 (                      )

8. 현재 버스정류장 이용 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 버스정류장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보도턱이 높아 버스 승·하차시 이용 불편  
 ② 버스이용을 위한 안내정보 부족(정류장안내단말기 미설치, 문자음성정보제공, 버스노선도식화 등)  
 ③ 정류장 편의시설 부족 (벤치, 쉼터(눈·비 고려한 대기시설), 휠체어 활동 공간 등)  
 ④ 교통약자의 안전시설물 미비 (안전펜스, 점자블록 등)  
 ⑤ 기타 (                      )

10. 현재 보도 및 횡단보도 이용 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1. 보도 및 횡단보도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보도폭원 협소      ② 보도턱 낮추기 미흡      ③ 보행 장애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④ 횡단보도 이용 시 어려움      ⑤ 기 타 (                      )

12. 현재 육교 이용 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3. 육교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승강설비 및 경사로 설치 미비                      ② 높은 계단으로 이용불편  
 ③ 미끄러운 바닥재질                                      ④ 이용편의시설 부재  
 ⑤ 기 타 (                      )                                      (점자블록, 점자표시, 손잡이 등)

1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가장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버스, 특별교통수단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차량, 휠체어리프트 차량 등), 택시 등)  
 ② 여객시설별 이동편의시설 (터미널,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③ 도로시설별 이동편의시설 (보도, 횡단보도, 육교, 장애인주차장 등)  
 ④ 기타(                      )

15. 대중교통(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상버스의 보급 확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탑승계단이 없는 버스)  
 ②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요금할인 정책  
 ③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 (노약자석, 수직손잡이, 안내방송 등 편의시설 개선)  
 ④ 교통약자를 고려한 정보제공 개선 (저상버스 정보, 음성·문자 동시지원 등)  
 ⑤ 기타 (                      )

16. 개선이 가장 시급한 여객시설은 무엇입니까?

- ① 시외버스터미널              ② 철도역              ③ 버스정류장              ④ 기 타(                      )

17. 여객시설 (시외버스터미널,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통약자를 고려한 여객시설 개선(주출입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화장실, 점자블록 설치 등)  
 ② 버스 정류장 디자인 표준화  
 ③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및 설치(버스정차대 정비, 야간조명시설 확충, 버스안내정보 정비 등)  
 ④ 여객시설(시외버스터미널,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의 안내시설 정비  
 ⑤ 기타 (                      )

18. 귀하의 입장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도로(보행)시설은 무엇입니까?

- ① 보도(인도)                      ② 횡단보도                      ③ 육교                      ④ 기타(                      )

19. 보행시설(보도 및 횡단보도, 육교 등)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통약자를 고려한 횡단여건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확대, 보행신호시간 연장 등)
- ②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보행)환경 정비  
(보도폭, 포장상태, 기울기, 점자블록, 지하도 및 육교 등)
- ③ 불법 주·정차단속 강화 및 상업 노상적치물 제거
- ④ 보행우선구역 확대(어린이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 등)
- ⑤ 기타 (                      )

## 2. 교통약자(장애인)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거주지	(구미시 읍, 면, 동)		
장애유형	① 지체장애	② 시각장애	③ 청각장애
	④ 뇌병변장애	⑤ 정신지체	⑥ 기타(      )

※귀하의 평상시 외출에 대해 하나에만 답해주십시오.

1. 외출 시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병원/의원      ② 통근(출·퇴근)      ③ 개인용무      ④ 여가/오락/친교  
⑤ 종교 활동      ⑥ 교육시설      ⑦ 복지관      ⑧ 기 타  
(      )

2. 평균 외출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주 4 ~ 5회      ③ 주 2 ~ 3회  
④ 한달에 3 ~ 4회      ⑤ 거의 하지 않는다

3. 외출 시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버스      ② 승용차      ③ 택시  
④ 특별교통수단      ⑤ 기 타  
(복지관 셔틀버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차량, 휠체어리프트 차량)      (      )

4. 현재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높은 탑승계단      ② 안내시설 미비  
(자동안내방송, 전자문자안내판, 행선지표시)  
③ 차내 통로협소      ④ 교통약자 좌석 및 공간부족      ⑤ 기 타 (      )

6. 특별교통수단(복지관 셔틀버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차량, 휠체어리프트 차량 등)을 현재 이용하고 계십니까?

- ① 이용 안함 (9번 문항으로)      ② 한달에 1~2번      ③ 1주일에 3~4번  
④ 거의 매일      ⑤ 기타 (      )

7. 특별교통수단(복지관 셔틀버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차량, 휠체어리프트 차량 등)을 이용하시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운행대수 부족                      ② 요금이 비싸다                      ③ 운행시간대의 제약  
 ④ 차량내 편의시설 불편              ⑤ 기 타 (              )

8. 특별교통수단(복지관 셔틀버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차량, 휠체어리프트 차량 등)의 이용요금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무료로 운영                  ② 버스정도의 요금                      ③ 택시비의 절반 수준  
 ④ 택시비와 같은 수준                  ⑤ 기 타 (              )

9.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철도역 이용 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0. 시외버스터미널, 철도역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출입구 및 보행 접근로상의 문제점 (높은 계단, 경사로 기울기 등)  
 ② 매표소·개찰구 및 승강시설 이용 불편  
 ③ 안내시설 및 정보제공 미비 (전자문자판, 안내방송, 수화안내시스템 등)  
 ④ 위생시설 사용의 어려움 (장애인 화장실 등)  
 ⑤ 기타 (                      )

11. 현재 버스정류장 이용 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2. 버스정류장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보도턱이 높아 버스 승·하차시 이용 불편  
 ② 버스이용을 위한 안내정보 부족 (정류장안내단말기 미설치, 문자·음성정보제공, 버스노선도 식화 등)  
 ③ 정류장 편의시설 부족 (벤치, 쉼터 (눈·비 고려한 대기시설), 휠체어 활동 공간 등)  
 ④ 교통약자의 안전시설물 미비 (안전펜스, 점자블록 등)  
 ⑤ 기타 (                      )

13. 현재 보도 및 횡단보도 이용 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4. 보도 및 횡단보도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보도폭원 협소                      ② 보도턱 낮추기 미흡                      ③ 보행 장애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④ 횡단보도 이용 시 어려움      ⑤ 기 타 (           )

15. 현재 육교 이용 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6. 육교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승강설비 및 경사로 설치 미비      ② 높은 계단으로 이용불편      ③ 미끄러운 바닥재질  
④ 이용편의시설 부재 (점자블록, 점자표시, 손잡이 등)                      ⑤ 기 타 (           )

1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가장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버스, 특별교통수단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차량, 휠체어리프트 차량 등), 택시 등)  
② 여객시설별 이동편의시설 (터미널,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③ 도로시설별 이동편의시설 (보도, 횡단보도, 육교, 장애인주차장 등)  
④ 기타 (                      )

18. 대중교통(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상버스의 보급 확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탑승계단이 없는 버스)  
②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요금할인 정책  
③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 (노약자석, 수직손잡이, 안내방송 등 편의시설 개선)  
④ 교통약자를 고려한 정보제공 개선 (저상버스 정보, 음성·문자 동시지원 등)  
⑤ 기타 (                      )

19. 개선이 가장 시급한 여객시설은 무엇입니까?

- ① 시외버스터미널      ② 철도역                      ③ 버스정류장                      ④ 기 타 (           )

19. 개선이 가장 시급한 여객시설은 무엇입니까?

- ① 시외버스터미널      ② 철도역                      ③ 버스정류장              ④ 기 타 (              )

20. 여객시설(시외버스터미널,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통약자를 고려한 여객시설 개선  
(주출입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화장실, 점자블록 설치 등)
- ② 버스 정류장 디자인 표준화
- ③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및 설치  
(버스정차대 정비, 야간조명시설 확충, 버스안내정보 정비 등)
- ④ 여객시설(시외버스터미널,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의 안내시설 정비
- ⑤ 기타 (                      )

21. 귀하의 입장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도로(보행)시설은 무엇입니까?

- ① 보도(인도)              ② 횡단보도                      ③ 육교                      ④ 기타 (              )

22. 보행시설(보도 및 횡단보도, 육교 등)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통약자를 고려한 횡단여건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확대, 보행신호시간 연장 등)
- ②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보행)환경 정비  
(보도폭, 포장상태, 기울기, 점자블록, 지하도 및 육교 등)
- ③ 불법 주·정차단속 강화 및 상업 노상적치물 제거
- ④ 보행우선구역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우선구역 등)
- ⑤ 기타 (                      )

### 3. 교통약자(임산부)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세
거주지	(구미시	읍,	면,	동)

※귀하의 평상시 외출에 대해 하나에만 답해주십시오.

1. 외출 시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병원/의원                      ② 통근(출·퇴근)                      ③ 개인용무                      ④ 여가/오락/친교  
 ⑤ 종교 활동                      ⑥ 교육시설                      ⑦ 복지관                      ⑧ 기 타 (        )

2. 평균 외출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주 4 ~ 5회                      ③ 주 2 ~ 3회  
 ④ 한달에 3 ~ 4회                      ⑤ 거의 하지 않는다

3. 외출 시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버스                                      ② 승용차                                      ③ 택시  
 ④ 특별교통수단 (복지관 셔틀버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차량, 휠체어리프트 차량)  
 ⑤ 기 타 (                      )

4. 현재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높은 탑승계단                      ② 안내시설 미비 (자동안내방송, 전자문자안내판, 행선지표시)  
 ③ 차내 통로협소                      ④ 노약자 좌석 및 공간부족                      ⑤ 기 타 (        )

6.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철도역 이용 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7. 시외버스터미널, 철도역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출입구 및 보행 접근로상의 문제점 (높은 계단, 경사로 기울기 등)
- ② 매표소·개찰구 및 승강시설 이용 불편
- ③ 안내시설 및 정보제공 미비 (전자문자판, 안내방송, 수화안내시스템 등)
- ④ 위생시설 사용의 어려움 (장애인 화장실 등)
- ⑤ 기타 (                    )

8. 현재 버스정류장 이용 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 버스정류장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보도턱이 높아 버스 승·하차시 이용 불편
- ② 버스이용을 위한 안내정보 부족  
(정류장안내단말기 미설치, 문자음성정보제공, 버스노선도식화 등)
- ③ 정류장 편의시설 부족 (벤치, 쉼터(눈·비 고려한 대기시설), 휠체어 활동 공간 등)
- ④ 교통약자의 안전시설물 미비 (안전펜스, 점자블록 등)
- ⑤ 기타 (                    )

10. 현재 보도 및 횡단보도 이용 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1. 보도 및 횡단보도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보도폭원 협소            ② 보도턱 낮추기 미흡            ③ 보행 장애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 ④ 횡단보도 이용 시 어려움            ⑤ 기 타 (            )

12. 현재 육교 이용 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3. 육교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승강설비 및 경사로 설치 미비                      ② 높은 계단으로 이용불편  
 ③ 미끄러운 바닥재질                                  ④ 이용편의시설 부재  
 ⑤ 기 타 (                      )                                  (점자블록, 점자표시, 손잡이 등)

1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가장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버스, 특별교통수단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차량, 휠체어리프트 차량 등), 택시 등)  
 ② 여객시설별 이동편의시설 (터미널,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③ 도로시설별 이동편의시설 (보도, 횡단보도, 육교, 장애인주차장 등)  
 ④ 기타(                      )

15. 대중교통(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상버스의 보급 확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탑승계단이 없는 버스)  
 ②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요금할인 정책  
 ③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 (노약자석, 수직손잡이, 안내방송 등 편의시설 개선)  
 ④ 교통약자를 고려한 정보제공 개선 (저상버스 정보, 음성·문자 동시지원 등)  
 ⑤ 기타 (                      )

16. 개선이 가장 시급한 여객시설은 무엇입니까?

- ① 시외버스터미널                      ② 철도역                      ③ 버스정류장                      ④ 기 타(                      )

17. 여객시설 (시외버스터미널,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통약자를 고려한 여객시설 개선(주출입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화장실, 점자블록 설치 등)  
 ② 버스 정류장 디자인 표준화  
 ③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및 설치(버스정차대 정비, 야간조명시설 확충, 버스안내정보 정비 등)  
 ④ 여객시설(시외버스터미널,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의 안내시설 정비  
 ⑤ 기타 (                      )



## 4. 교통약자(영유아동반자)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	세
거주지	(구미시	읍,	면,	동)

※귀하의 평상시 외출에 대해 하나에만 답해주십시오.

1. 외출 시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병원/의원                      ② 통근(출·퇴근)                      ③ 개인용무                      ④ 여가/오락/친교  
 ⑤ 종교 활동                      ⑥ 교육시설                      ⑦ 복지관                      ⑧ 기 타 (                      )

2. 평균 외출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주 4 ~ 5회                      ③ 주 2 ~ 3회  
 ④ 한달에 3 ~ 4회                      ⑤ 거의 하지 않는다

3. 외출 시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① 버스                      ② 승용차                      ③ 택시  
 ④ 특별교통수단 (복지관 셔틀버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차량, 휠체어리프트 차량)  
 ⑤ 기 타 (                      )

4. 현재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높은 탑승계단                      ② 안내시설 미비 (자동안내방송, 전자문자안내판, 행선지표시)  
 ③ 차내 통로협소                      ④ 노약자 좌석 및 공간부족                      ⑤ 기 타 (                      )

6.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철도역 이용 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7. 시외버스터미널, 철도역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출입구 및 보행 접근로상의 문제점 (높은 계단, 경사로 기울기 등)
- ② 매표소·개찰구 및 승강시설 이용 불편
- ③ 안내시설 및 정보제공 미비 (전자문자판, 안내방송, 수화안내시스템 등)
- ④ 위생시설 사용의 어려움 (장애인 화장실 등)
- ⑤ 기타 (                    )

8. 현재 버스정류장 이용 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 버스정류장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보도턱이 높아 버스 승·하차시 이용 불편
- ② 버스이용을 위한 안내정보 부족  
(정류장안내단말기 미설치, 문자음성정보제공, 버스노선도식화 등)
- ③ 정류장 편의시설 부족 (벤치, 쉼터(눈·비 고려한 대기시설), 휠체어 활동 공간 등)
- ④ 교통약자의 안전시설물 미비 (안전펜스, 점자블록 등)
- ⑤ 기타 (                    )

10. 현재 보도 및 횡단보도 이용 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1. 보도 및 횡단보도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보도폭원 협소            ② 보도턱 낮추기 미흡            ③ 보행 장애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 ④ 횡단보도 이용 시 어려움            ⑤ 기 타 (                    )

12. 현재 육교 이용 시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3. 육교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승강설비 및 경사로 설치 미비                      ② 높은 계단으로 이용불편  
 ③ 미끄러운 바닥재질                                  ④ 이용편의시설 부재  
 ⑤ 기 타 (                      )                                  (점자블록, 점자표시, 손잡이 등)

1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가장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버스, 특별교통수단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차량, 휠체어리프트 차량 등), 택시 등)  
 ② 여객시설별 이동편의시설 (터미널,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③ 도로시설별 이동편의시설 (보도, 횡단보도, 육교, 장애인주차장 등)  
 ④ 기타(                      )

15. 대중교통(버스) 이용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상버스의 보급 확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탑승계단이 없는 버스)  
 ②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요금할인 정책  
 ③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 (노약자석, 수직손잡이, 안내방송 등 편의시설 개선)  
 ④ 교통약자를 고려한 정보제공 개선 (저상버스 정보, 음성·문자 동시지원 등)  
 ⑤ 기타 (                      )

16. 개선이 가장 시급한 여객시설은 무엇입니까?

- ① 시외버스터미널                      ② 철도역                      ③ 버스정류장                      ④ 기 타(                      )

17. 여객시설 (시외버스터미널,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통약자를 고려한 여객시설 개선(주출입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화장실, 점자블록 설치 등)  
 ② 버스 정류장 디자인 표준화  
 ③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및 설치(버스정차대 정비, 야간조명시설 확충, 버스안내정보 정비 등)  
 ④ 여객시설(시외버스터미널,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의 안내시설 정비  
 ⑤ 기타 (                      )



## ■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특별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서비스 제공과 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내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말한다.
2. “운전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으로부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탁받은 교통사업자에 소속된 자로서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되어 특별교통 수단을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3. “교통사업자”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또는 시장, 군수, 시설관리이사장을 말한다.
4. “콜센터”라 함은 경상남도 내 시·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인력 및 콜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5. “이용제한”이라 함은 특별교통수단(콜센터)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중 상습적인 폭언, 예약 취소 등 이용 부적격자에 대한 일시적인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6. “배차정지”라 함은 운전원이 콜센터의 배차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콜센터에서 일차적으로 실시하는 제한 절차를 의미한다.
7. “교통약자”라 함은 관련 법령과 경상남도 내 각 시·군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규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의미한다.

제3조(콜센터의 업무수행 범위) 콜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과 이용대상자 간의 콜 관제 및 상담
2.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 확인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4. 특별교통수단 콜 운영에 따른 민원 처리
5. 콜센터 운영 관련 시·군 간의 정보협력 및 지원
6. 콜센터 운영사항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등
7. 기타 콜센터의 운영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조(이용대상자의 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절차)

### ① 이용 신청

1. 이용 신청은 콜센터 대표번호인 1566-4488번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예약을 할 수 있다.
2. 이용 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약자 본인,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기관의 장 등이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용신청인은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콜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이용 예약

1. 예약이용의 경우 콜센터는 전일 24시를 기준으로 접수하며, 이용 희망시간이 겹칠 경우 후순위 접수자에게 이용시간의 중첩사항을 알리고 이용 시간을 조정하여 재 접수하도록 한다.

2. 콜센터는 예약으로 운행할 차량을 일일 운행차량의 20% 범위내로 하며, 당일의 차량 운행상황에 따라 예약 이용의 운행비율을 가감할 수 있다.

3. 운행비율은 월평균 차량의 운행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4. 예약은 일일 1회에 한해서 가능하다.

③ 특별교통수단(콜센터)의 응대

1. 콜센터는 이용대상자의 복지카드에 명시된 신분 및 장애등급을 음성 또는 SMS(언어, 청각 장애인에 한함)로 이용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며, 운전원은 탑승 전 이용자의 본인 여부 및 대상 여부를 복지카드에 의해 재차 확인하여야 한다.

2. 특별교통수단은 예약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3. 콜센터는 이용자가 승차위치에서 대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기가 가능한 경우 당일의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승차 위치 및 시간을 재 지정할 수 있다.

4. 콜센터는 이용대상자가 승·하차 시 운전원의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차량의 배차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산시스템을 통해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콜센터는 차량배차가 확정된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운전원에게 차량 배차 후 이용자의 전화번호, 출발지, 목적지를 SMS(문자) 등으로 통지한다.

나. 승·하차에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가 있는 경우 운전원에게 차량배차시 이 사실을 알린다.

다. 이용자의 탑승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출발 시 이용자에게 차량번호를 SMS(문자) 등으로 알린다.

제6조(운전원 준수사항) 운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원은 운행 당일의 기상 조건과 노면상태 등을 감안하여 정속(감속) 주행하여야 한다.

2. 운전원은 운행시간 내에는 항상 콜센터와 연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에 탑재된 콜시스템이 실시간 운행상태를 전송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전원은 이용자의 장애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 소통을 한다.

4. 운전원은 이용자가 장애인으로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하며, 특히 여성 이용자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한다.

5. 운전원은 이용자가 승·하차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하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가. 승·하차는 차량이 주·정차가 가능한 안전지역에서 실시한다.

나. 승·하차의 지원범위는 승·하차 지점으로 제한한다. 다만, 정차한 지점이 이용자의 최종 목적지를 벗어난 경우에는 목적지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승·하차 지점으로부터 벗어나 지원할 경우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6. 운전원은 주행 중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위급하거나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운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가까운 응급구조체계(119) 또는 치안센터(112)에 신고 후 인계·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운전원은 차량이 출발 직전에 미터기의 주행버튼을 누르며, 도착지점에서 지불버튼을 눌러 이용금액을 이용자에게 확인시킨 후 하차 전에 요금을 받아야 하며, 운행요금 이외의 일체의 사례비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8. 운전원은 이용자가 운행과 관련한 불편 민원을 제기한 경우 콜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행일지에 기록한다.

9. 운전원은 이용자가 콜센터에 변경신청 없이 임의로 목적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차 후 콜센터로 보고하여야 한다.

10. 운전원은 콜센터의 지시 없이 승객을 태우거나 합승시킬 수 없다.

11. 운전원은 콜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이용대상자 준수사항) 이용대상자(교통약자)와 이용신청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대상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신원확인을 위한 복지카드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운전원에게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용대상자 및 이용신청인은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할 수 없다.

4. 이용신청인은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콜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운전원 및 상담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욕설·폭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 접촉이나 폭력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이용자는 차량의 운행 중단을 초래하는 의도적인 차량 진로 방해와 차 실내에 오물 투기 등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특별교통수단이 도내를 벗어나 운행하는 경우는 도내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국한되며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는 일반병원 또는 종합병원 의사소견서를 징구하여 1일 1회에 한해 편도로 이용 가능하며, 치료 목적의 원거리 이용자는 종합병원이 발행한 의사소견서를 징구하여 1일 1회에 한해 편도로 이용하여야 한다.

9.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장애인 보조조건은 예외로 한다.
10. 이용자는 1회 신청으로 편도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11. 출발지와 목적지로 지정된 곳 이외에 지역을 경유하여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조치) 콜센터는 중증 장애인의 이동 편의 제공과 공공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부적격자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차등 실시할 수 있다.

① 이용(승차) 거부은행 현장에서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반사항으로서 다음의 경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승차)을 거부할 수 있다.

1. 복지카드(신분증)의 제시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2. 실제 탑승인과 복지카드의 대상자가 다를 경우
3. 65세 이상인 자와 입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4. 보호자 없이 탑승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용 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이용제한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한조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또는 녹음파일 등)가 징구된 경우에 한한다.

－ 위반 사항에 따른 이용제한

1. 당일 즉시 이용자 또는 예약자로서 차량 도착 후 이용 취소한 자 (당일)
2. 차량 도착 후 3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는 경우가 3회 이상인 자 (10일)
3.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예약취소가 3회 이상인 자 (1개월)
4.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과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자 (1개월)
5. 무임승차가 2회 이상인 자 (1개월)
6. 교통약자와 동반할 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동승 및 중도 하차 요구자 (1개월)
7. 치료목적 이외에 사적인 용무로 경상남도를 벗어난 자 (2개월)
8. 상담원, 운전원에 대한 욕설·폭언·폭행·성적 회롱을 한 경우가 2회 이상인 자 (2개월)
9. 의도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방해한 자(방뇨, 오물투기 등) (2개월)
10. 콜센터에 무단방문하여 소란을 야기하거나 관제 업무를 방해한 자 (2개월)

③ 배차 정지

콜센터는 운전원이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즉각 해당자를 배차 정지하고, 그 사실을 행정기관 및 교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콜센터의 지시 없이 승객을 태우거나 합승시킨 경우(위기사항 또는 구난 시 제외)
2. 정당한 사유 없이 콜센터의 배차 명령을 거부한 경우
3. 이용자와 결탁, 운행 중 습득한 내용 누설, 반말 사용 등으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시킨 경우
4. 운행요금 이외에 사례비를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5. 콜센터에 무단방문하여 소란을 야기하거나 관제 업무를 방해한 경우

④ 제한조치에 대한 콜센터의 업무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부적격자가 발생할 경우 콜센터는 즉각 제한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상남도과 해당 행정기관의 콜센터 운영관리 프로그램 상에 관련 정보를 등재한다. 다만, 제한조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또는 녹음파일 등)가 징구된 경우에 한한다.
2. 콜센터는 이용자에게 녹취사실을 알리고 경미한 위반사항이라 할지라도 위반자에게 위반사항 및 제한조치 내용을 알려야 하며, 해당 녹음파일을 생성 보관하여야 한다. 단, 생성된 파일의 보관은 6개월 이내로 한다.
3. 콜센터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부적격자관리대장」을 작성·비치토록 하며, 누적 관리하여야 한다.
4. 발생시점이 야간이거나 공휴일 등인 경우 행정기관의 업무개시 시점까지 제한조치를 유보하며, 업무개시 후 즉각 제한조치를 실시한다.
5. 콜센터는 모든 제한 조치에 대해 전월 발생 현황을 취합하여 월초에 경상남도 및 해당 행정기관으로 관련자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또는 녹음파일 등)를 첨부하여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6. 운행 중 발생한 운전원과 이용자간의 민원사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비할 경우 운전원 등 관련자의 경위서(6차 원칙에 의하여 간단 명료하게 작성)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이때 콜센터는 수시 보고하고, 제한조치의 실시 여부는 경상남도 및 관련 행정기관의 서면 결정에 따른다.
7. 제6호에 대한 행정기관의 결정이 다를 경우 콜센터는 경상남도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행정기관 등의 협조)

1. 행정기관은 이용대상자에 대한 기준과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및 버스요금 등을 변경할 경우 제반사항을 콜센터로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2. 교통사업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중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운전원에 대한 경위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콜센터로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콜센터의 인원 구성 및 직무 등)

- ① 콜센터는 센터장 1명과 상담원 10명이상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센터장 : 상담원의 직무 감독 및 민원처리, 통계업무 등
  2. 상담원 : 이용승객에 대한 상담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관제 업무
- ② 콜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위탁운영기관이 수행한다.
- ③ 콜센터의 구성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운영규정에 명시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상사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동료간의 불화를 조장하여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콜센터의 위신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 수행상 지득한 고객 개인의 신상정보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이용대상자 중 다수가 중증 장애인임을 유념하여 장애 등급과 연령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성실하고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6. 콜센터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민원사항에 대해 즉시 발생 경위 등을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7.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 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하도록 한다. 단, 입증되지 않은 어느 일방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징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경고 : 구두상 위반사항을 지적하여 반성하도록 한다.
  2. 견책 : 시말서를 제출하고, 반성하도록 한다.
  3. 면직 : 시말서 3회 이상 제출자에 한해 그 직을 박탈한다.

제11조(콜센터 직원교육) 콜센터 직원은 장애인 이해교육 및 도내 지리정보 습득을 포함한 친절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운영규정의 준용) 특별교통수단(콜센터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및 경상남도의 운영규정 시달이 있을 경우 그 지침을 준용한다.

제13조(운영규정의 해석 등) 이 운영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과 경상남도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 . 조례 제 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으로 구미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저상버스”란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운행하는 영업용 및 자가용을 포함한 승합자동차 중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평으로 승·하차가 가능한 경사판 등을 장착한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4.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제4조(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7.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9.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차량을 일정비율로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내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필요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제3장 이동지원센터

**제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 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⑥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은 시에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담당할 수 있다.
- ⑦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제7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장 특별교통수단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예외로 한다.

-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2. 특별교통수단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구미시일 경우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 내 어디서든지 이용 가능하다.
  3.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는 전화, 인터넷으로 즉시 신청, 예약신청 및 장기이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4.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자의 확인 후 지원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5.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⑤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은 시에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담당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단, 시각장애인은 동반하는 가족이 있을시 이용 가능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구미시 교통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다만, 시외구간의 경우 해당구간 시외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 제5장 위탁운영

**제11조(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구미시설공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3.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구미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미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최선을 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2. 제1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영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한 경우

3. 재해 및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거나 수탁자가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국가, 경상북도, 시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9조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해지할 경우, 이로 인하여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장 보칙

**제14조(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Gumi**

· 구미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 참여연구진



(사) 영남교통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김 갑 수 (공학박사)

수석연구원 유 영 근 (공학박사)

연구원 황 정 훈 (공학박사)

김 민 석 (공학석사)

김 동 욱 (공학석사)

이 진 욱 (공학석사)